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6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1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8. 복지문화위원회
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강한곤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5. 11. 1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11. 14.(금)
- 검토기간: 2025. 11. 14.(금) ~ 11. 21.(금)

## 2. 개정이유

-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사회적 추세와 청년층의 문화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합창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단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확대 변경(안 제6조제1항)
- 위촉된 단원의 활동 연령 기준 상향(안 제7조제3항)

## 4. 검토의견

- 구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구립합창단은 1991년 창단되어 현재 48명으로 운영 중이며, 정기연주회, 찾아가는 음악회, 초청 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합창단 신규단원 선발 연령인 ‘25세에서 55세까지’를 ‘19세에서 60세’로 상·하한 연령폭을 넓히고, 단원으로 활동 가능한 연령을 ‘60세까지’에서 ‘65세까지’로 상향 조정, 현행 연령 자격요건 완화로 성악에 재능있는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것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단원 선발을 위하여 전문가 심사 등 합창단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※ 달서구립합창단 현황

구 분	계	지휘자	반주자	솔리스트	남성 및 여성 단원				
					남		여		
현 원	48	1	1	4	4		38		
					테너	베이스	소프라노	메조소프라노	알토
					1	4	11	15	13

# 관계법령

## 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